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-15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의 제6항(종전의 제5항)의 “보관·관리 등”을 “보관·관리 및 비교·공시 등”으로 한다.

- ⑤ 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·공시하여야 하며, 보험회사는 비교·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-15조의3(금리인하 요구 등) ① ~ ④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의 안내, 절차 및 기 록의 <u>보관·관리</u>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5-15조의3(금리인하 요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 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·공시하여야 하며, 보험회사는 비교·공시에 필요 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의 안내, 절차, 기록 의 <u>보관·관리</u> 및 <u>비교·공시</u>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</p>

<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보험과	보험감독국
연 락 처	(02)2100-2967	(02)3145-7476